

#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

□ 제정 : 2021. 12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수원과학대학교 소속의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물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 확립 및 학술연구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특수관계자 정의)**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.

**제4조(참여제한 원칙)**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물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(참여제한의 예외)**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, 과제의 특성상 연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**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연구자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
**제7조(참여내용 관리)** 연구책임자는 특수관계자가 연구 참여시 연구노트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고,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입증자료를 보관하여 지원기관의 점검이나 각종 감사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미이행시 제재조치)** 연구자가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, 연구비 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호)

##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

### 1. 연구과제 일반사항

연구책임자	성명	학과	직급	연락처
연구과제명				
지원기관			사업명	
연구기간			연구비	
연구분야			학문분야	

### 2. 특수관계자 정보

성명		연구책임자와의 관계	
생년월일		소속 / 직급	
참여율 (%)		참여기간	
인건비지급총		연락처	
학 력	학 위 명	취 득 일	취 득 기 관
	학사		
	석사		
	박사		
경 력	기 관 명	기 간	부서/직위/직무
전공(연구)분야			
<b>참여사유 및 역할(주요 업무)</b>			
<p>연구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기재</p>			

